

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



한국환경공단



수신자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
(경유)

제 목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시행 안내

1.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1조(폐기물처분부담금) 및 제29조(보고 및 검사 등)관련입니다.
2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3.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소각·매립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4. 이에, 귀 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는 경우 불임의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기한내에 신고·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문의처 : 032-590-5093(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팀)
○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: www.budamgum.or.kr

- 붙 임 : 1.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안내 요약문 1부.
2.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안내문 1부. 끝

한국환경공단



★대리 박성환 팀장 고인표 처장 03/30 최성수

협조자

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팀-567 (2018.03.30.) 접수 ()
 우 (22689)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(종합환경연구단지 내) / <http://www.keco.or.kr>
 전화 032-590-5093 /전송 032-590-4088 / parksh@keco.or.kr / 공개

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시행 안내문

[시행일 : 2018년 1월 1일]

■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?

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는 제도입니다.

■ 부과대상

부과 대상	납부의무자	부과·징수기관
사업장폐기물*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(위탁 및 자가처리 모두 대상)	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**	한국환경공단

* 사업장폐기물: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, 사업장생활계폐기물, 건설폐기물, 지정폐기물

** 사업장폐기물배출자: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등을 받은 자 등

○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.

<참고사항>

-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(예 : 재활용, 파쇄 등) 만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.
-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.(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2 및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3제2항1호)

[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]

- ① 폐석면
- ②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(PCBs)을 다음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
가. 액체상태의 것(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)
나. 액체상태 외의 것(용출액 1리터당 0.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)
- ③ 의료폐기물(태반은 제외한다)
- ④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
- ⑤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
· 고시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
- ⑥ 폐농약(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)
- ⑦ 폐의약품(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)
- ⑧ 의료폐기물을 멸균·분쇄한 잔재물
- 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

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시행 안내 요약

■ 신고대상

- 사업장 내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중량을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※ 발생폐기물을 소각·매립이 아닌 다른 방법(재활용 및 파·분쇄 등)으로만 처리할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

■ 신고일자

-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: 최초신고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신고(2018년 발생량)
- 건설폐기물 배출자 : 안내문 2페이지 '수시신고' 참조

■ 신고방법

- :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(www.budamgum.or.kr)에 회원가입 후 전산입력
- ※ 세부 신고방법은 시스템 내 교육자료 중 '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매뉴얼' 참조

■ 부과금액 산정

$$\text{폐기물 처분량(kg)} \times \text{부과요율(원/kg)} \times \text{산정지수}$$

- ※ 폐기물 처분량 :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소각·매립한 폐기물의 중량
- ※ 부과요율은 안내문 3페이지 참조
- ※ 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한다.

■ 자주하는 질의응답

- Q. 폐기물처리비용을 지불하며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납부의무자(신고대상)는 누구인가요?
A. 납부의무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며, 자가 또는 위탁처리와 상관없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납부의무자입니다.
- Q. 발생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소각이나 매립이 아닌 '파쇄·분쇄'입니다. 신고대상인가요?
A. 파쇄·분쇄는 중간처분이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'파쇄·분쇄' 등 중간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.
- Q. 지정폐기물만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. 100% 감면이면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?
A. 감면대상폐기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. 신고 시 감면신청(증빙서류 포함)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감면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Q. 폐석면을 위탁으로 매립하여 처분하였습니다. 신고대상인가요?
A. 폐석면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명시한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입니다.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대상 폐기물이 아닙니다.